

『구미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
등에 관한 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·조정하기 위해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을 개정(2020. 6. 4. 시행)함에 따라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·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단장의 임무, 실무팀의 편성 등에 관한 사항(안 제5조, 제6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안전재난과,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
-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의 개정(2020. 6. 4. 시행)으로 대규모 재난 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가 제도화됨에 따라, 법 제17조의2 제5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안으로,
-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조직 구성 및 주요임무, 실무팀의 편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임.

○ 검토 결과,

-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재난현장에 대규모 자원봉사활동이 요구되는 경우 지자체 요청에 따라 관할구역 내 자원봉사센터와 대한적십자사 등을 중심으로 설치·운영하는 한시적 기구로서, 자원봉사자 모집, 교육, 배치, 활동관리 등 자원봉사활동 업무 전반을 총괄·조정하는 기구임.
- 재난현장에서의 자원봉사활동을 총괄 조정·배분함으로써 단기간 활동 분야 및 지역 중복 등을 해소하고 재난피해자에게 공평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,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원활한 자원봉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평상시 체계적인 네트워크 구축·운영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.
- 재난상황 발생 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즉각적인 설치 및 가동태세를 갖추기 위한 것으로,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